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2조제12호), 해양경찰청장의 해양경비정보 수집·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의2 신설),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
-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 활동 중 해상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II. 검토의견

○ 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는 해상검문검색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벌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함.¹⁾

○ 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지물품” 수송의심 선박등을 해상검문검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형식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²⁾

다만, 규정형식을 구체화하여 이해관계자가 “금지물품”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해양경비법」

제21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벌칙의 구성요건을 고시로 위임한 것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제입제공업소의 상품취급기준의 내용을 문화관광부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함.

다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우리 헌법 제40조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 기타 비법규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률이 행정규칙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명령(헌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법 제32조 제3호는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처벌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바94등 전원재판부 결정).

<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 ----- ----- ----- ----- ----- ----- ----. ----- ----- ----- ----- ----- -.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 ----- ----- ----- ----- ----- ----- ----. ----- ----- ----- ----- ----- -.
1·2. (생략) <u><신설></u>	1·2. (생략) <u>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u>	1·2. (생략) <u>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u>

○ 그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